수성알파시티청아람 공공분양주택 해약세대 입주자 모집공고

대구도시공사 공고 제2022-097호(공고일 2022.08.01.)

■ 공급대상 : 대구광역시 수성구 알파시티2로 96 「수성알파시티청아람」 공공분양주택 582세대 중 해약세대 2호

대구도시공사에서는 콜센터(053-350-0300)를 통해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간혹 폭주하는 상담전화와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제공으로 청약관련 사항에 대한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객 여러분께서는 청약과 관련한 상담은 청약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청약자 본인이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주민등록등·초본, 등기부등본 및 관련서류 등을 발급받아 직접 확인하신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이후 해약으로 발생한 공가세대를 공급하는 것으로, 주택의 내·외부 시설물 보수 및 추가설치 등 일체의 추가공사 및 청소 없이 현재 상태대로 분양되며, 계약일로부터 2개월 이내 잔금납부 후 입주하셔야 합니다.

알려드립니다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이후 해약으로 발생한 잔여세대를 공급하는 것으로, 이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2.08.01.(월)이며,** 이는 청약자격 (청약신청, 나이, 세대구성원, 거주지역, 주택소유, 재당첨제한 등)의 판단기준일이 됩니다.

■ 이 주택의 **주택관리번호는** 2022910233 이며, **공고문은 대구도시공사 홈페이지(www.duco.or.kr) 및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www.applyhome.c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금회 공급 주택은 최초공급 후 해약된 공가주택으로서 주택의 내·외부시설물 보수 및 추가설치 등 일체의 추가공사 및 청소 없이 현재 상태대로 분양됩니다.

■ 해당 세대에 대한 견본주택은 운영이 종료되었으나, 사이버 견본주택은 홈페이지(주택건설-공영주택건설-단지별 정보-수성알파시티청아람 건립사업)를 통해 확인가능하오니 청약신청 시 입주자모집공고문 및 팸플릿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첨자 발표 후 **당첨자를 대상으로 1회에 한하여 해당동호 세대관람을 진행**할 예정입니다.(일정 별도통보)

■ **본 공고문은 신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금회 공급에 필요한 사항만을 정리**하였고, 주택 세부면적, 지구여건, 단지여건,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 공개 등 **이 공고문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2018.10.16.)를 준용**하므로, **대구도시공사 홈페이지(www.duco.or.kr)등을 통해 세부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신청자의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신청 및 계약체결 전 반드시 현장 확인을 통해 단지여건을 반드시 파악하신 후 신청(계약)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본 단지의 청약은 PC 또는 스마트폰에서 가능합니다. 스마트폰 사용 시 WIFI에 연결되지 않을 경우 데이터 요금이 부과되며, 스마트기기(스마트폰 등)에 따라 O/S 및 브라우져 버전, 호환성 등의 문제로 일부 사용이 불가할 수 있사오니, 사전에 모바일청약이 가능한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모바일청약이 시스템 장애 등으로 중단될 경우 일반 PC를 이용하여 인터넷청약이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입주자 모집공고일(2022.08.01.) 현재 대구광역시에 거주(주민등록표 기준)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인 만 19세 이상 성년자에게 1인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합니다.**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민간 사전청약, 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 임대주택 포함)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하여 당첨시 부적격 당첨 또는 무효처리 되므로 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신청자의 입주자 저축 가입여부, 소득 및 자산요건을 불문**하며, **당첨자로 선정되면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명단관리가 되며, 재당첨제한(10년), 전매제한(소유권이전등기일),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구 1순위 제한을 적용**받게 됩니다.

■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수성알파시티청아람의 기 당첨자 및 계약자(본인 및 세대원), 부적격 당첨자로 그 기간에 있는자(본인)는 신청이 불가하며, 계약체결 이후라도 적발시 계약취소** 됩니다.

■ **청약제한사항(부적격 당첨, 재당첨제한, 공급질서교란자 등)이 있는 경우 신청이 불가**하며, 위 사항은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www.applyhome.co.kr)홈페이지에서 개별 확인 가능합니다.

■ 본 주택은 이미 준공 및 입주가 완료된 주택으로, **계약 후 2개월 내 잔금 납부 후 입주**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주택 담보대출의 제한 등), 금융시장의 변화 또는 대출기관의 규제 등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러한 제한으로 대출이 불가할 경우 분양대금은 계약자 본인 책임 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은 주택소유여부, 중복청약 및 재당첨여부 등의 검증대상 및 판단기준이 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의 기준일은 공고일(2022.08.01.)** 이며, 그 이후 등본상 세대 구성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예: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이전 등) 공고일 기준 세대구성원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세대주와의 관계, 전입변동일 포함 발급)을 당첨자 서류와 같이 **제출하여야 하며 증빙서류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당첨자에게 있습니다.**

아래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가 속한 등본의 직계존비속까지 포함)이 다음 **[주택 및 분양권등]**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판단**

[무주택세대구성원]

가.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주택공급신청자'라 함)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라.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주택 및 분양권등]

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부동산 중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다. 나목에 따른 지위(이하 "분양권등"이라 한다)를 **승계취득**(전체 또는 일부의 권리를 매매하여 취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민법」상 미성년자는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해야 하거나,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만 신청 가능. 이 경우 자녀 및 형제자매는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 2018년 12월 11일 개정·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이라 함)을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판단하오니, 청약 시 관련 내용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일('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사업계획승인,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한 주택을 신규 계약한 경우, '공급계약체결일' 기준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단, 시행일 이후 모집공고 등을 하였으나, 청약 미달로 인해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한 주택을 최초로 취득한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
- 시행일('18.12.11.) 이전에 모집공고 등을 통해 공급한 분양권등을 매매로 취득하여 시행일 이후 실거래신고한 경우, 실거래신고서상 '매매대금완납일'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단, 시행일 전에 모집공고 등을 한 주택에 청약하여 취득하고 계신 분양권 등은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만, 해당 분양권등의 주택을 취득 시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대구광역시 수성구)**은 「주택법」 제63조에 의한 **청약과열지역이며,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는 주택**입니다. 따라서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재당첨제한 10년,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전매제한기간이 적용**되며, 상기 재당첨기간 중에 다른 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하되,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은 제외)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며,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 또한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접수 시 신청자격을 확인하지 않고 신청자의 입력사항만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므로 본 공고문의 신청자격(무주택세대구성원, 거주지역, 재당첨제한, 주택소유 여부 등) 유의사항 등을 사전에 정확하게 확인하시기 바라며,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제출서류 등을 통해 우리 공사에서 확인한 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된 경우 계약이 취소됩니다. (계약체결 이후라도 적발 시 계약취소)**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라 과거 재당첨 제한 대상 주택(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토지임대주택,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주택,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 등)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여 재당첨 제한 기간 중에 있는 분은 청약할 수 없으며, 청약하여 당첨 시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어 부적격 당첨자 본인은 **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사전당첨자를 포함)로 선정될 수 없는 불이익이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우리 공사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되거나 당첨자 서류 제출일에 당첨자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 등)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마감시간까지 청약신청을 완료(제출기준)하여야 하므로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신청하지 마시고, 미리 인터넷에 접속하여 여유 있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제5항에 따라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을 계약체결한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공급계약 및 분양권 전매 시 **부동산 실거래 신고 대상**이 되며, 최초 공급계약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우리 공사가 관할 지자체에 단독 신고합니다. 단,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수분양자는 동법 제3조제1항에 의거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주택취득을 위한 자금조달 및 입주 계획'**을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 및 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 행정시의 시장을 말함)·군수 또는 구청장에 제출해야 하므로 계약체결 시 **'주택취득 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공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공사로 미제출 시 수분양자가 직접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 직접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로 인한 책임은 모두 수분양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청약신청시 유의사항

■ 재당첨제한 적용주택(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주택,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토지임대주택,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 등)에 당첨된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어 청약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은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선정 제한** 등))

■ **현장접수 시 우려되는 혼잡을 방지하고 접수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인터넷 청약만 가능하오니, 인터넷 청약을 위하여 신청접수일전에 공동인증서(舊 공인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미리 발급** 받으시기 바라며, 반드시 해당 접수일에 청약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해 무주택세대구성원 1인 1건만 신청 가능합니다. (1세대내 2명이상 당첨시 재당첨제한으로 모두 부적격처리)

■ 신청접수 시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입력(기재)사항만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므로, **본 공고문의 신청자격 (무주택세대구성원여부, 거주지역, 재당첨제한여부, 주택소유여부 등) 유의사항 등**을 사전에 정확하게 확인하시기 바라며,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우리공사에서 확인한 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때에는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선정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신청자의 무주택여부 등 조회 확인을 위해 해당기관에 개인정보 제공이 필수적이므로 청약 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동의해야 하며, 당첨자 서류제출 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가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Ⅰ 공급규모·공급금액 및 공급가격등

1. 공급규모

■ 공공분양, 10년 공공임대 아파트 및 행복주택 10~25층 11개동 844세대 중 공공분양 해약세대 2세대

■ 위치: 대구광역시 수성구 알파시티2로 96, 수성알파시티청아람

2. 공급대상

공급유형	주택형	타입	세대당 주택면적(㎡)						세대별 대지지분(㎡)	총 공급세대	금회 모집		최고층수
			공급면적			그밖의 공용면적		계약면적			당첨자	예비입주자	
			주거전용	주거공용	주거전용+주거공용	기타공용	지하주차장						
공공분양	84.9520A	84A	84.9520	26.3190	111.2710	9.5608	62.8379	183.6697	67.0348	582	2	10	25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주택형으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발코니 확장형으로 되어있으며, 팸플릿 등으로 동·호배치도, 평면도 등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습니다.(㎡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 ㎡ × 0.3025 또는 ㎡ ÷ 3.3058)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동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고,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노인정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해당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 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동일한 주택형의 경우라도 해당세대 주거공용부분은 동·호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난방방식은 개별난방, 구조는 철근콘크리트벽식이며, 주차장은 주동통합형으로 지하 주차장은 각각 아파트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 최초 입주시기는 2021. 6. 25일입니다.

3. 공급금액[발코니 확장금액 포함]

(단위 : 원)

동호	주택형	타입	총주택가격	분양대금 납부 방법 및 시기(발코니 확장금액 포함)	
				계약금(20%) (계 약 시)	잔금(80%) (계약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
102동 2401호	84.9520A	84A	485,844,000	97,168,000	388,676,000
103동 1301호	84.9520A	84A	481,109,000	96,220,000	384,889,000

■ 상기 공급금액에 **발코니 확장비용 및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입주지정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개월이며, 계약이후 잔금완납 시 즉시 입주 가능합니다.(**상기주택은 선납할인 적용이 불가**)
■ 잔금의 납부는 별도 안내를 생략하오니 계약시 납부한 가상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랍니다.(인터넷뱅킹, 폰뱅킹, 타행입금 가능함)
■ 잔금을 납부기한 이후에 납부할 경우에는 체납한 금액에 대하여 그 연체일수에 연체이율(현행 연6.5%이며 변동가능)을 적용하여 산정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적용이율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변경일을 기준으로 변경된 이율에 의하여 각각 일할 계산합니다.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예치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주지정기간(계약일로부터 60일)을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입주(열쇠 불출) 및 잔금납부 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발생하는 관리비, 제세공과금, 특별수선충당금, 법령 제·개정에 따른 추가되는 시설투자비 등을 수분양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 당해 주택의 소유권은 잔금 완납 후 수분양자에게 이전되며, 완납 후 등기에 대하여 별도로 안내하지 않으므로 주택가격완납 후에는 법정기한 내에 수분양자가 직접 등기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 취득일(잔금납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 납부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는 법령의 변경 및 금융관련 정부정책(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 금융시장 변화 또는 대출기관의 규제 등이 변화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하며,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은 계약자 본인 책임 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Ⅱ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1.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8.01.) 현재 대구광역시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 하는 만19세 이상의 (아래의 '무주택(분양권 등 포함)여부 판단대상' 참고) 중 1인 1주택 신청가능(1인 2건 이상 청약신청하여 당첨시 부적격 당첨 또는 무효처리 되므로 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라며, 계약체결 이후 적발시 계약이 취소됨)**

※ 「민법」상 미성년자는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거나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만 신청가능합니다.

※ **1세대는 주민등록표등본을 기준**(분리세대 배우자는 동일세대로 간주)으로 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하여 당첨시 부적격 당첨 또는 무효처리 되므로 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라며, 계약체결 이후 적발시 계약이 취소됩니다.**

※ **입주자저축 가입여부, 소득 및 자산기준 충족여부는 불문하며, 신청자 본인 및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인 경우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수성알파시티청아람의 기 당첨자 및 계약자(본인 및 세대원), 부적격 당첨자로 그 기간에 있는 자(본인)는 신청이 불가하며, 계약체결 이후라도 적발시 계약취소 됩니다. (세대원은 하단 <표1>의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의미합니다.)**

※ **청약제한사항(부적격 당첨, 재당첨제한, 공급질서 교란 등)이 있는 경우 신청이 불가**하며, 위 사항은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www.applyhome.co.kr)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청약신청 제한**
- 동 주택(최초 입주자모집공고)에 당첨되어 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 예비입주자 중 추가입주자로 선정된 자
- 동 주택(최초 입주자모집공고)에 당첨된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
- 부적격 당첨자로서 그 기간 중에 있는 자
- 과거 재당첨제한 대상 주택에 당첨되어 현재 그 기간 중에 있는 자
- 공급질서교란자로서 그 기간 중에 있는 자

■ **당첨자 선정방법 및 동·호수 결정**
-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주택형별로 추첨의 방식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는 무작위로 결정합니다.

■ **아래의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로 명단관리되고,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닌 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주택 소유)
-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대구광역시)에 거주하지 않는 자
- 본 주택의 당첨자 발표일 기준 재당첨제한 주택에 당첨된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 같은 세대에 2인 이상 당첨된 자

2. 무주택세대구성원 및 주택소유여부 판정 기준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신청자격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여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의3호, 제4호 및 제53조에 따라 아래기준으로 판단하며, 당첨자발표(2022.08.16.) 후 주택(분양권 등 포함)소유여부 전산검색 및 주민등록표등본 확인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분이 판명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우리 공사가 소명요청을 안내한 날부터 7일) 내에 아래 기준에 근거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공급신청 자격자**

- **주택공급신청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성년자가 신청가능합니다.**
 ※ 「민법」상 미성년자는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해야 하거나,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만 신청 가능. 이 경우 자녀 및 형제자매는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 **<표1> 무주택(분양권 등 포함)여부 판단대상**

- 아래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가 속한 등본의 직계존비속까지 포함)이 다음 **[주택 및 분양권등]**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무주택자로 판단**

[무주택세대구성원]
가.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주택공급신청자'라 함)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라.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주택 및 분양권등]
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부동산 중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다. 나목에 따른 지위(이하 "분양권등"이라 한다)를 **승계취득**(전체 또는 일부의 권리를 매매하여 취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주택(분양권 등 포함)의 범위**

-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하며, 주택은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재산세 과세대장 등에 등재되어 있는 전국소재 주택
- **주택(분양권등)의 공유 지분 소유자 및 주택의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 소유자도 주택소유자에 해당됩니다.**
 ※ 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지분 소유자 전원이 주택소유자로 인정되고, 공동소유, 공동상속의 경우에는 지분면적에 관계없이 지분소유자 전원이 각각 그 주택의 면적 전부를 소유한 것으로 간주함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부동산 중 주택을 공급받은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하 '분양권 등'이라 함)를 취득한 경우, **공급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분양권등을 매매**로 **승계취득**하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주택(분양권 등 포함)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20㎡ 이하의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1호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0㎡이하 주택 및 분양권등을 2호 이상 또는 2세대 이상 소유한 경우는 그 주택수 만큼 유주택으로 봄**
-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무허가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해야 함
-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

3. 신청일정 및 신청방법 [PC인터넷·모바일 신청, 방문신청불가]

신청일시	신청방법	신청장소
2022.08.10.(수) (09:00~17:30)	• 인터넷 신청 (방문신청 불가) - PC 또는 스마트폰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홈페이지(www.applyhome.co.kr)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 앱

※ 본 아파트는 '청약Home'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청약으로만 신청이 가능(현장접수 불가)**하며, **공동인증서(舊 공인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방식만 가능**합니다. 반드시 청약이전에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해당앱으로 미리 발급받으시어 저장하시거나 금융인증서를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시 유의사항

- **신청접수 시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입력사항만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므로 본인의 신청자격(무주택세대구성원, 주택소유여부, 거주지역, 나이 등)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이고, 재당첨제한 등의 기준은 "당첨자 발표일"이며, 주택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합니다.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부적격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청약신청은 규제지역 내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은 1건만 청약 가능하며, 1인이 2건 이상 청약하여 2건 이상 당첨 시, 모두 부적격 처리합니다.
- 규제지역 내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세대 2명 이상 당첨 시 재당첨제한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합니다.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관리 되며,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재당첨 제한(10년) 적용 및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에 당첨 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에 따른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자는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은 당첨자에 한해 우리공사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된 때에는 계약체결 불가함(계약체결 이후라도 계약취소)을 유념하시고, 본인의 착오신청으로 인한 불이익 발생 시 우리공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수성알파시티청아람의 기 당첨자 및 계약자(본인 및 세대원), 부적격 당첨자로 그 기간에 있는 자(본인)는 신청이 불가하며, 계약체결 이후라도 적발 시 계약취소 됩니다.
- **청약제한사항(부적격 당첨, 재당첨제한, 공급질서 교란 등)이 있는 경우 신청이 불가**하며, 위 사항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applyhome.co.kr)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4. 입주자 선정방법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은 **한국부동산원의 전산프로그램에 의해 컴퓨터 무작위 추첨하며, 예비입주자 선정 비율은 500%입니다.**

■ 예비입주자는 금회 공고에 한하여만 예비자의 지위가 인정되며 금회공고의 주택계약완료시 예비자의 지위는 소멸되며, 예비순번을 부여받지 못한 자는 낙첨 처리됩니다.

5. 예비입주자에 대한 사항

■ 예비입주자 예비순번을 부여받지 못한 자는 낙첨 처리됩니다.

■ 금회 공급 대상 주택 당첨자의 미계약, 부적격당첨 및 계약해지 등으로 남는 주택이 발생할 경우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게 되며, 공급방식 및 일정 등은 별도 통보합니다.

■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금회 공급하는 주택의 최초공급계약 체결일(2022.08.30.)로부터 60일이며, 해당 기간이 경과하면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고 공사가 보유한 예비입주자 관련 정보는 모두 폐기합니다.

■ 예비입주자 공급 일정 등은 청약 시 기재된 연락처를 기준으로 별도 안내함에 따라, **연락처가 변경되거나 잘못 기재하신 분은 대구도시공사 보상판매처를 방문 또는 서면으로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우리 공사에 고지**하여야 하고, 고지하지 않을 경우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입주자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우리 공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Ⅲ 당첨자 발표 및 서류 제출, 계약체결 등

1. 당첨자(예비입주자) 발표, 서류제출 및 계약체결 일정

■ 일정 및 장소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는 아래 당첨자 서류제출 기한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 시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계약체결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포기(당첨자로 관리)로 간주됩니다. [우편 및 팩스 접수 불가]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발표	서류제출(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현장계약체결(당첨자)
2022.08.16.(화)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www.applyhome.co.kr) 또는 스마트앱에서 개별조회 *인증서 로그인후 조회	2022.08.18.(목) 10:00~16:00	2022.08.30.(화) 10:00~16:00
	서류제출 및 현장계약체결 장소 : 대구도시공사 보상판매처 (주소 : 대구시 북구 침산로 73, 2층)	

※ 당첨자 명단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당첨자 및 동·호수 확인 시에는 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는 서류제출 기한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우편접수 불가)하여야 하고, 미제출시 계약이 불가하며, 계약체결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체결 하지 않을 경우 계약포기로 간주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과거 당첨사실유무 등 **전산검색 결과 적격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적격당첨임을 소명하는 서류 제출 후 적격자로 인정받은 경우에만 계약 체결이 가능하므로 위 계약체결일보다 늦어질 수 있습니다.

※ 계약 이후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에도 당첨자(예비입주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계약이 취소됩니다.

※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일정은 당첨자 계약 후 잔여세대가 있을 경우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별도 안내 예정이며, 공급일정 등은 청약 시 기재된 연락처로 안내함에

따라 연락처가 변경되거나 잘못 기재하신 분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에 따라 대구도시공사 보상판매처에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고지하여야 하고, 고지하지 않을 경우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입주자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우리공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2. 당첨자(예비입주자) 제출서류[입주자모집공고일 2022.08.01. 이후 발급분에 한함]

■ 공통 안내사항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는 아래 당첨자 서류제출 기한(2022.08.18.)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서류제출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계약체결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포기(당첨자로 관리)로 간주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모든 제출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8.01.)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주민등록번호는 모두 포함하여 발급받아야 합니다.
- 신청자격에 맞는 제증명서류(당첨자 제출서류 참조)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을 취소하며, 부적격 당첨에 따른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당첨자가 신청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하여야 하며, 소명자료 제출관련사항은 해당자에게 별도 안내예정입니다.
- 본인이 직접 서류제출 시 본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을 지참하여야 하며, 본인 이외의 자가 서류제출 시(배우자포함) 본인 및 제출자의 신분증 등을 모두 지참하셔야 합니다.
- **당첨자의 배우자가 재외국민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증(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서), 외국인등록증(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을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로 인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대구도시공사가 신청자의 신청자격 심사를 위해 원천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으로부터 조사대상자 전원의 정보를 수집·조사하여야 하므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를 조사대상자 전원이 동의하여 대구도시공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 불가능 합니다.(동의서 양식은 입주자모집공고 시 별도 첨부를 확인하시어 미리 작성 후 제출하시기 바람)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제출서류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8.01.)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포함하여 발급]**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해당자)			
○		① 주민등록표등본	본인	※ 반드시 주소변동사항,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사유, 세대구성사유, 세대원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전부 포함하여 발급
	○		배우자 및 세대구성원	• 당첨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 공고일 이후 '공고일 현재 세대주'와 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공고일 당시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3자 제공동의서	본인 및 세대구성원	**※ 홈페이지에 게시된 동의서를 미리 작성하여 본인 및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적격심사가 불가하여 계약 불가함** • 당첨자 및 세대구성원 전원(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 만14세 이상의 세대구성원은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만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		③ 주민등록표초본	본인	※ 반드시 인적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 사항, 세대주성명/관계 등을 전부 포함하여 발급
	○		배우자 및 세대구성원	• 공고일 이후 '공고일 현재 세대주'와 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공고일 당시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표초본 제출(상기 초본 발급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	④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발급 • 당첨자의 배우자가 없거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 **계약 시 구비서류**

구 분	계약서류	
본인 계약 시	현장계약	① **계약금(무통장입금 또는 인터넷뱅킹) 입금 확인서류 : 입금계좌는 가상계좌 추후 별도 안내, 현장수납 불가**
		② 당첨자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③ 당첨자의 도장 (본인 계약 시 서명날인도 가능)
		④ 주택취득 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대구도시공사 홈페이지 공고 내 양식다운로드)
제3자 대리계약 시 추가서류	**본인 외에는 모두 대리계약자로 간주되며, 위 '본인 계약 시 계약서류'와 함께 아래 서류를 추가 제출**	
	인감증명 방식	**서명확인 방식**
	① 위임장 (계약 장소에 비치) ※ 인감도장 날인 필수	① 본인(계약자)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 ('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일 것)
	② 당첨자의 인감증명서(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및 인감도장(위임장에 직접 날인하려는 경우)	② 본인(계약자)서명사실확인서(발급 시 위임받는 사람 기재)
	③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③ 대리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Ⅳ 기타 유의사항 및 안내사항

1. 청약, 당첨, 입주, 관리 등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전화상담 및 방문고객 청약상담 등은 청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상담내용에 대해 **공고문 및 관련법령을 통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구 및 단지여건 등과 관련한 세부 사항은 본 단지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2018.10.16.) 당시의 공고문을 준용**하므로, 대구도시공사 홈페이지에서 최초 입주자모집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된 자는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사실이 한국부동산원에 통보**됨에 따라 당첨자로 전산관리 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하며, 모든 책임은 당첨자에게 있습니다.

■ 당첨 발표 후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주택소유, 과거 당첨사실 등 부적격자로 안내된 분은 안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 소명기간(**우리 공사가 소명요청을 통보한 날로부터 7일**)내에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소명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부적격 당첨자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선정 제한등))을 받게 됩니다.

■ 공급 신청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공급 신청 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으므로 신청접수 시 기재내용과 주택공급신청서에 기재된 내용과의 일치여부를 반드시 대조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접수 및 계약체결 전 단지 및 현장여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단지 및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단지 및 세대의 시설물 등에 대한 추가나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당첨된 분은 계약체결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 명단관리되며, 예비입주자는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당첨자로 관리됩니다.

■ 계약체결 후 해약하는 경우 계약서에 따라 **위약금[총주택가격(발코니확장금액 포함)의 10퍼센트]**을 공제합니다.

■ 이 주택의 입주지정기간은 2022.08.30.(화) ~ 2022.10.31.(월)입니다.(계약일로부터 60일, 계약일자에 따라 입주지정기간 변동될수 있음)

■ 당첨 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변경내용을 대구도시공사 보상판매처로 개인정보 수정사항을 서면통보하시기 바라며, 변경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당첨자 및 계약자의 책임입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정('20.02.21.시행)에 따라 주택의 공급(분양)계약을 체결할 경우 우리 공사 단독으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청에 부동산 실거래 내역을 신고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단,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수분양자는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의거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주택취득을 위한 자금조달 및 입주 계획'을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 및 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 행정시의 시장을 말함)·군수 또는 구청장에 제출해야 하므로 **계약체결 시 '자금조달 및 입주 계획서'를 공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공사로 미제출 시 수분양자가 직접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 직접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로 인한 책임은 수분양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2. 벌칙 등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주민등록법령 위반 등의 공급질서 교란 등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취소 및 고발조치 합니다.

■ 본 주택은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등으로 관련법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3. 지구 및 단지 여건[최초 입주자 모집공고문(2018.10.16.)참조]

■ 기입주한 단지로 단지 및 현장여건을 반드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사업주체 및 시공업체 현황

사업주체(사업자등록번호)	시공업체	감리회사 및 금액
대구도시공사 (504-82-06254)	㈜한진중공업(건설부문), 거대종합건설(주), ㈜명덕건설	㈜동우이앤씨, ㈜세명기술단 감리금액 : 4,605,595,000원

5. 분양문의 안내

수성알파시티청아람 분양문의 ※점심시간 12:00 ~13:00 제외

■ **대구도시공사 콜센터 : 053-350-0300** (평일 : 09:00 ~ 18:00)
■ **대구도시공사 보상판매처 : 053-350-0335, 0336** (평일 : 09:00 ~ 18:00)
■ **대구도시공사 홈페이지 : www.duco.or.kr**

2022. 08. 01.

대구도시공사